먹는물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먹는물]

『먹는물』 콘텐츠에서는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 설치관·리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먹는물 1
1. 먹는물 개관 4
1.1. 먹는물 개념 및 수질관리 4
1.1.1. 먹는물의 개념 및 종류 4
1.1.2. 먹는물 수질기준 등 4
1.2. 정수기 등 관리 8
1.2.1. 정수기 설치·관리 8
1.2.2. 냉·온수기 설치·관리 12
2. 수돗물 14
2.1. 수돗물 관리 14
2.1.1. 일반수도의 수질관리 14
2.1.2.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 관리 18
2.2. 수돗물 공급 등 20
2.2.1. 수돗물 공급 및 이용 20
3.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22
3.1. 먹는샘물등의 제조 22
3.1.1. 먹는샘물등 제조업 허가 등 22
3.1.2. 먹는샘물등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 24
3.2. 먹는샘물등의 수입 등 27
3.2.1. 먹는샘물등 수입 및 유통 27
3.2.2. 먹는샘물등 판매 33
3.3. 먹는샘물등의 폐기처분 및 회수 36
3.3.1. 폐기처분 조치 등 36
5. 먹는해양심층수 39
5.1.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39
5.1.1.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등 39
5.1.2.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및 표시 40
5.2. 먹는해양심층수 수입 등 43
5.2.1. 먹는해양심층수 수입 및 유통 43
5.2.2. 먹는해양심층수 판매 등 48
5.2.3.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49

1. 먹는물 개관

1.1. 먹는물 개념 및 수질관리

1.1.1. 먹는물의 개념 및 종류

먹는물이란?

먹는물의 개념

▪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 등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먹는물의 종류

구분	수처리 여부		개념
먹는물	자연 상태의 물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처리수	수돗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먹는샘물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인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먹는염지하수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의 함량이 2,000 ㎎/L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인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4호)

1.1.2. 먹는물 수질기준 등

먹는물 등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5조제1항).

먹는물 수질검사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먹는물의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릅니다(「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제12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 8의2).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등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먹는샘물 등을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1조의2제2항).

수질기준

▪ 먹는물 수질기준은 성인이 매일 2L씩 평생 동안 물을 마셨을 때에도 건강상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수준으로 결정된 값을 의미 합니다. 먹는물 기준에 적합한 물은 지속적으로 음용하여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출처: 『상수도 미보급지역 안심지하수 수질조사 수질검사 해설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22.03., 2쪽).

▪ 먹는물 종류별 수질기준 항목은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방사능에 관한 기준 등이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수도법」 제26조제2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

>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은 건강에 해로움이 확인된 유기물질을 말합니다.
>
>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은 건강에 해로움이 확인된 무기물질을 말합니다.
>
> ※ 심미적 영향물질은 건강에 해로움은 확인되지 않으나 심리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수질의 전반적인 상태를 판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검사항목입니다.
>
> < 출처: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및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 전단,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및 별표 1).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5조제5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수질정보는 <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 감시원

▪ 먹는물 수질 감시원 배치

▹ 먹는물 수질에 관한 조사·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둡니다(「먹는물관리법」 제7조제1항).

▪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7조제2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먹는물 관련 영업이란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수질검사

▪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을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분기마다 해당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대해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이 때 수질검사는 취수해역에서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끌어온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제4항).

※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호).

▪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해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소속 공무원 또는 수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

수질기준

▪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항목은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등이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

> ※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및 검사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질감시원

▪ 수질감시원 배치

▹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와 관련한 기준·규격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감시원을 둡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수질 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 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위생시험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에서 해양심층수학, 해양학, 수산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해양환경행정,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수질 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

√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1.2. 정수기 등 관리

1.2.1. 정수기 설치·관리

정수기란?

정수기란?

▪ 정수기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

정수기 분류

▪ 정수기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3조).

구분		내용
처리용량	간이정수기	유효정수량이 500L 이하인 정수기
	가정용정수기	일반가정·식당·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유효정수량이 500L를 초과하는 정수기
	단체급식용정수기	학교·교육기관·집단생활기관 등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특수제작된 정수기
원수공급	저장형정수기	상부에 설치된 용기에 원수를 채우고 중력에 의하여 필터를 통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의 정수기
	폿트형정수기	정수장치가 들어 있는 용기에 원수를 넣어 필터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
	수도직결형정수기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여 수압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
정수원리 및 방식	자연여과식정수기	중력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하는 정수기
	필터여과식정수기	수압에 의하여 물이 필터를 통해 정수하는 방식으로 활성탄(Activated Carbon)필터, 정밀여과(MF; Micro Filtration)필터, 한외여과(UF; Ultra Filtration)필터 등을 사용하여 정수하는 정수기
	이온교환수지식정수기	이온교환수지가 물속의 이온성 물질을 치환하여 제거하는 정수기
	역삼투압식정수기	원수에 압력을 가하여 삼투막(Reverse Osmosis)을 통과시켜 정수하는 정수기
	기타정수기	위의 정수원리 및 방식의 여과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수하는 정수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정수기 설치·관리

정수기의 설치·관리자의 신고의무

▪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설치·관리자), 정수기 설치 대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 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1호).

※ 정수기 설치·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의2).

▪ 정수기 설치 신고 관련 업무처리흐름도(「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고인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필요시)	→	신고증명서 발급
(다중이용시설 대표자)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설치 및 관리 방법

▪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4항·제6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1호).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 냉·난방기 앞

▪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정수기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6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3호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 먹는물의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
-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이란 그람음성·무아포성의 간균으로서 락토스를 분해하여 기체 또는 산을 발생하는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 혹은 갈락토스 분해효소의 활성을 가진 세균으로서, 소독되지 않은 환경에 상시 존재 가능하며 대부분 비병원성이나 병원성 대장균 등 일부는 장관출혈 등 병원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탁도(Turbidity)란 물이 빛을 흡수하고 분산하는 능력의 척도로서, 물속의 부유물질과 관련해 가정 및 산업용수의 수질오염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출처: 『2017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7.06, 5면 및 115면)

▪ 위 정수기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정수기 설치·관리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2호).

소비자 보호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는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4. 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내용</th><th>위반 시 제재</th></tr>
<tr><td colspan="2">판매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td><td>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td><td rowspan="7">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td></tr>
<tr><td colspan="2">판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td><td>제품교환</td></tr>
<tr><td rowspan="5">판매 후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td><td>수리가 가능한 경우</td><td>무상 수리</td></tr>
<tr><td>수리가 불가능한 경우</td><td>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td></tr>
<tr><td>교환이 불가능한 경우</td><td>구입가 환불</td></tr>
<tr><td>같은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같은 고장이 다시 발생한 경우</td><td>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td></tr>
<tr><td>교환된 제품에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td><td>구입가 환불</td></tr>
</table>

소비자보호센터

▪ 정수기 제조업자 등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4조 본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내용		위반 시 제재
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1항제2호)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의 장비 등을 갖출 것	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	
	피팅(fitting: 고정시키는 부품)·튜빙(tubing: 배관)·가압펌프·체크밸브·취수꼭지·필터 등 정수기부품	
	저수조청소용구·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수리기구	

▪ 다만, 제조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제조업자 등이 각각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먹는물관리법」 제44조 단서).

※ 전국 소비자보호센터 현황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냉·온수기 설치·관리

냉·온수기란?

냉·온수기란?

▪ "냉·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2).

※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 총용존고형물의 함량(含量)이 2,000 ㎎/L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냉·온수기 설치·관리

냉·온수기의 설치·관리자의 신고의무

▪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냉·온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설치·관리자), 냉·온수기 설치 대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 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1호).

> ※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3).

설치 및 관리 방법

▪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냉·온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4항·제6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1호).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 냉·난방기 앞

▪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5항·제6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 냉·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

▪ 위 냉•온수기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냉·온수기 설치·관리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2호).

2. 수돗물

2.1. 수돗물 관리

2.1.1. 일반수도의 수질관리

수돗물의 수질기준

수돗물 수질기준

▪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수도법」 제26조제1항).

-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 그 밖에 수돗물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도 및 일반수도사업

일반수도란?

▪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6호).

> ※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일반수도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7호).
>
> ※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8호).
>
> ※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관할구역 주민의 음용(飮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9호 및 「수도법 시행령」 제3조).

일반수도사업이란?

▪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19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 관리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 관리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근거조문
수질검사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수량분석 √기록 작성·보존 및 결과공개	2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도법」 제29조 및 제85조제5호
수돗물 정보공개	√수질기준 위반내용 주민 공지 √수질개선조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도법」 제27조 및 제85조제3호
수돗물품질보고서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및 제공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도법」 제31조 및 제87조제3항제5호
정수처리기준	√정수처리기준 준수의무 √탁도 등 기준에 맞는 정수시설 설치·운영 √정수처리된 물의 주기적 검사, 결과 기록·보존 및 보고 √기준 위반 시 수도시설 개선 등 조치	정수처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수시설 설치·운영, 검사, 기록·보존·보고, 개선조치 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도법」 제28조, 제85조제4호 및 제87조제3항제4호의2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및 보고의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도법」 제28조의2 및 제87조제3항제4호의3
건강진단	√관련 종사자 건강진단 √진단 결과 질병 종사자 업무 종사 금지	2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도법」 제32조 및 제85조제7호·제8호
위생상의 조치	√소독 등 위생 조치 √건축물·시설 소유자 등의 소독 등 위생조치 및 세척 등 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독 등 위생조치 미이행 시)	「수도법」 제33조제1항·제5항 및 제83조제6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질검사

▪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검사항목	검사주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매일 1회 이상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매주 1회 이상[다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함. 이하 같음)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정수장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및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검사	매월 1회 이상[다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수도꼭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매 분기 1회 이상

마을상수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우라늄에 관한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및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전항목	매년 1회 이상[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 위반 시 제재

▹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일반수도사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29조제1항 및 제85조제5호).(「수도법」 제85조제1호).

2.1.2.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 관리

전용상수도 수돗물 관리

전용상수도란?

▪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000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12호 본문).

▪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수도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수도법 시행령」 제4조).

▹ 일일 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 시설의 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것

√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의 길이가 1천500미터 미만인 것

√ 저수조의 유효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전용상수도 수돗물 관리(「수도법」 제53조)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근거조문
수질검사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수량분석 √기록 작성·보존 및 결과공개	수질검사·수량분석 미실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록 미작성·미보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도법」 제29조, 제53조, 제85조제5호 및 제87조제4항제4호
건강진단	√관련 종사자 건강진단 √진단 결과 질병 종사자 업무 종사 금지	2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도법」 제32조, 제53조 및 제85조제7호·제8호
위생상의 조치	√소독 등 위생 조치 √세척 등 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도법」 제33조, 제53조 및 제83조제6호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 관리

소규모급수시설이란?

▪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14호).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55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55조제3항 및 제4항).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수도법」 제55조제5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

▪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검사항목	검사주기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우라늄에 관한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및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전항목	매년 1회 이상[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 위반 시 제재

▹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85조제5호).

2.2. 수돗물 공급 등

2.2.1. 수돗물 공급 및 이용

수돗물 공급

급수의무

▪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수도법」 제39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3).

▹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200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5조제9호)

▪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9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수도법」 제87조제4항제8호)

▪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수도법」 제39조제3항).

급수의 긴급정지 등

▪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7조제1항 및 제53조).

※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1조제2호)

▪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7조제2항 및 제53조).

※ 위반 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제7호)

수돗물 판매 금지

▪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수도법」 제13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2조제1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위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13조제2항).

수돗물 이용

수도요금

▪ 수도사업자는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수도법」 제12조제2항), 수도요금 등의 공급규정에 대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을 받아야 합니다(「수도법」 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원인자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수도법」 제68조제1항).

3.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3.1. 먹는샘물등의 제조

3.1.1. 먹는샘물등 제조업 허가 등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란?

▪ "먹는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인 샘물로서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먹는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의 함량이 2,000㎎/L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인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 신청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21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8호서식)

시설기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으로 정하는 사항
구비서류	√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 √ 제조공정 설명서 √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 √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필름 √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 제조업만 해당) √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 제조업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위의 내용을 위반한 무허가 영업의 경우 영업폐쇄조치(「먹는물관리법」 제46조)를 받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압류 또는 폐기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 제4호).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7조제2호).

영업허가 제한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24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불허가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 이하 같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④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은 그 대표자를 포함)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⑤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 할 때 ⑥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샘물 등의 개발 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

▪ 위반 시 제재

▸ 영업허가제한의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8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시·도지사는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

지하수이용부담금액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지하수법」 제30조의3제3항제2호).

▸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지하수법」 제30조의3제6항).

▪ 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시(특별자치시 제외), 군 또는 자치구에 지급해야 합니다(「지하수법」 제30조의3제8항).

3.1.2. 먹는샘물등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방법

먹는샘물 제조방법

▪ 먹는샘물은 원수(原水)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침전(沈澱), 여과(濾過), 폭기(曝氣)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살균(光學的殺菌) 또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吸着) 등의 물리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사용하지 못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제1호파목).

- 여과시설 중 역삼투막(Reverse Osmosis Membrane)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나노필터를 이용하거나 가열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된 먹는샘물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샘물과 먹는샘물의 무기 물질 중 칼슘(Ca), 나트륨(Na), 칼륨(K), 마그네슘(Mg)의 함량, 증발잔류물 및 수소이온농도(pH)의 변화가 20% 이내여야 합니다.

- 제조공정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거나 첨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산가스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원수 중에 자연상태로 함유되어 있는 탄산가스를 별도로 포집(包集)하여 사용해야 하며 먹는샘물에 함유된 탄산가스의 최종 농도가 0.1%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먹는염지하수 제조방법

▪ 먹는염지하수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 제조되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제1호하목).

- 염지하수에 포함된 물질의 조정,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 등 광화학적 처리는 할 수 있으나 오존처리 등 화학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제조 공정에 수처리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염지하수의 염분을 가공 처리하는 방법은 역삼투압법, 전기투석법 등의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막여과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염지하수에서 추출한 것에 한정하여 먹는염지하수에 첨가할 수 있으며, 제조과정에서 염지하수를 가공처리한 물질 중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제품에 다시 첨가하는 경우에 최종 제품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

용기 및 세척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용기는 유리 등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4조제1항).

▪ 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가 사용될 수 있으나 세척제가 용기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제1항).

▪ 용기세척 및 그 밖에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정수는 먹는샘물등이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으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제3항).

▪ 먹는샘물등의 용기에는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제4항).

먹는샘물등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 먹는샘물등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0조).

표시사항
품목명
제품명
원수원 및 수원지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영업번호
내용량
무기물질함량
그 밖에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표시방법

▪ 위 사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1항).

1. 용기에 표시 또는 부착
2. 병목 또는 병마개에 표시 또는 부착. 다만, 제품명, 유통기한, 전화번호 및 수원지를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3.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하며,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전화번호 및 수원지를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4.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이 경우 위의 1. 및 2.의 표시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개별제품은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전화번호 및 수원지를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주 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제외한 다른 면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2항).

▪ 위 1., 2. 및 4.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3항).

- 품목명, 제품명, 수원지 및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함(다만, 품목명은 병마개 윗면에 표시할 수 있음)
-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해야 하며, 주 표시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 생략 가능

▪ 위 3.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4항).

- 품목명, 제품명, 수원지 및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함
-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해야 함
- 주 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는 표시사항 이외의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 됨
- QR코드를 인식하였을 때 바로 연결되어 소비자에게 즉시 보여지는 화면에는 정보표시면의 절반 이상이 보여야 함
- 먹는샘물등의 홍보·광고에 관한 사항은 표시사항 하단에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면적은 주 표시면과 정보표시면 면적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음

▪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5항).

▪ 소비자에게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6항).

- 위 3.에 따라 표시하는 자는 전화안내 등의 방법으로 QR코드 이용이 쉽지 않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 비대면판매의 경우 표시사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 정보란 등에 표시해야 함

> ※ "주 표시면"이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샘물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또는 QR코드를 인식하여 바로 연결되는 화면 중 최상단에 위치한 면을 말하며,

"정보표시면"이란 주 표시면 하단 또는 측면에 위치하여 주 표시면에 표시되지 않은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을 말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2조제5호 및 제6호).

※ 먹는샘물등의 세부표시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 등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않은 먹는샘물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2항).

▪ 위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1호 및 제48조제2항).

3.2. 먹는샘물등의 수입 등

3.2.1. 먹는샘물등 수입 및 유통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신청

▪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

※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 등록 관련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등록 신청 (「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21조제3항)	– 시설 기준(「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 – 구비 서류(「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제2항, 별표 3 및 별지 제8호서식) √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 √ 보관시설명세서 √ 원수(原水)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 √ 원수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	무등록 영업: 폐쇄조치 등(「먹는물관리법」 제46조), 압류 또는 폐기처분(「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4호)
		무등록 영업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4호)

등록 제한 (「먹는물관리법」 제24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 이하 같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 ④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등록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이면 그 대표자를 포함)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①부터 ③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등록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8호)]

▪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

▪ 시·도지사가 위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5항).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의무

▪ 먹는샘물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1항).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수입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1항)	– 구비서류(「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 수입신고서(전자문서 포함) √ 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 송장·선적증명서 등 수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원수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만 해당하며, 신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 √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만 해당) √ 원수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신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	압류 또는 폐기처분(「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6호)

먹는샘물등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유통전문판매업"이란?

▪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의2).

먹는샘물등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먹는샘물등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

※ 먹는샘물등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관련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21조제6항)	– 시설기준(「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 – 구비서류(「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의2 및 별지 제8호서식) √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 √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	무신고 영업: 폐쇄조치 등(「먹는물관리법」 제46조), 압류 또는 폐기처분(「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4호)
		무신고 영업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4호의2)

신고 제한 (「먹는물관리법」 제24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법인이면 임원을 포함)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자 ④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등록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이면 그 대표자를 포함)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①부터 ③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등록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8호)]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3.).

- 보관창고에는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샘물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작성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해 보관해야 합니다.
-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에는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시·도지사는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

지하수이용부담금액

▪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지하수법」 제30조의3제3항제2호).

-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지하수법」 제30조의3제6항).

3.2.2. 먹는샘물등 판매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

유통기한

▪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포함)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1항).

> ※ "유통기한" 이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2조제4호).

▪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경우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2항).

▪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먹는샘물등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검사성적서(수입 먹는샘물등의 경우 최초 수입 시에는 원수 채수일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일자가 같아야 함)
  - √ 검사성적서는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국내·외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원수는 호정별로 검사)
  - √ 검사결과는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
-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질검사 시 제품의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품의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허가증, 수입판매등록증 중 1종 사본
-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것으로써, 상온(15°C25°C) 조건에서 보관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각 12L 이상

위반 시 제재

▪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샘물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항 및 제58조제7호).

판매 등의 금지

부정한 먹는샘물등 판매 금지

▪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19조).

구분	행정제재	벌칙
먹는샘물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7조제1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7조제1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2호)

광고의 제한

광고 제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
-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 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의 광고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등의 수입 또는 유통·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먹는샘물등의 광고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 및 조치를 위반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9호).

▪ 또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시정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3호 및 제14호).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등의 금지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등의 금지

▪ 먹는샘물등과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0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호).

-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이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

위반 시 제재

▪ 위의 내용을 위반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 먹는샘물등과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9호).

유사표시의 사용 금지

유사표시 사용 금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0조의2).

위반 시 제재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4호의2).

3.3. 먹는샘물등의 폐기처분 및 회수

3.3.1. 폐기처분 조치 등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폐기처분 등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폐기처분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준과 규격이나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위반되는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4항).

※ 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 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의 등록·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 폐쇄,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7호)

▪ 관계 공무원이 위의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3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회수·폐기 등을 명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5항).

공표명령

위반 사실 공표명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 수질 기준이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제1항).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제2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내용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먹는샘물등의 회수

먹는샘물등의 회수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는 먹는샘물등이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먹는샘물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제1항 전단).

▪ 이 경우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먹는샘물등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제6항).

회수계획서 제출	회수·폐기 등의 완료 보고
제품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 및 판매량	회수·폐기 등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회수사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회수계획량 (위반사실을 알게 된 당시 해당 제품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	
회수방법	
회수 이행기간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5. 먹는해양심층수

5.1.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5.1.1.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등

먹는해양심층수란?

먹는해양심층수란?

▪ "먹는해양심층수" 란 해양심층수를 자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해양심층수" 란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으로부터 200미터 아래(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수심을 말함)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신청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시설기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7로 정하는 사항
구비서류	√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 √ 제조공정 설명서 √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

▪ 위반 시 제재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호).

영업허가 제한

▪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불허가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③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가 취소(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④ 임원이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위반 시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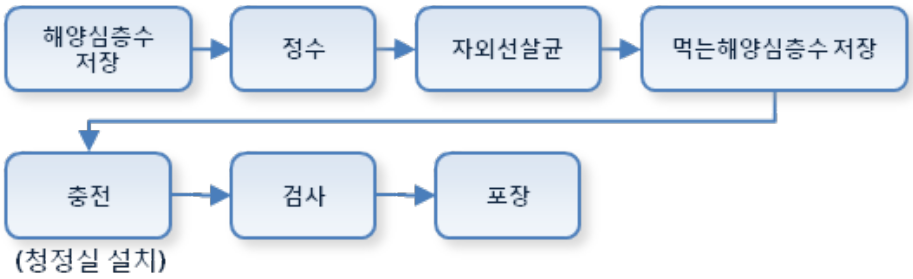
▹ 영업허가제한의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합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5.1.2.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및 표시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제조방법(「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먹는해양심층수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제조됩니다.



▪ 제조공정에서는 해양심층수에서 가공처리한 물질 중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제품에 다시 첨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제품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하지 아니한 것은 먹는해양심층수에 첨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양심층수에 탄산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설비를 사용하여 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을 설치하여 탄산가스를 첨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는 해양심층수에 포함된 이온물질을 조정하거나,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 살균 등은 할 수 있으나 오존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기 및 세척

▪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는 유리 등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6조제1항).

▪ 용기의 세척은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용기에 남지 않도록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7조제1항).

▪ 용기의 세척 및 그 밖에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척수는 다음의 원수나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가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으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병입 전의 최종 세척수는 원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7조제2항).

- 원수를 담는 용기 : 원수로 세척
- 먹는해양심층수를 담는 용기 : 먹는해양심층수로 세척
-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담는 용기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에 따라 해당 처리수로 세척

표시기준

표시사항

▪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8조의2).

표시사항
품목명
제품명
취수해역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원수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내용량
무기물질함량
해양심층수 표지
그 밖에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표시방법

▪ 위 사항은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9조).

▹ 표시사항은 용기나 병마개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또는 부착함. 다만, 표시사항을 병마개에 부착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 이 경우 다음의 사항 중 일부를 병마개 윗면에 표시할 수 있음)

√ 제품명

√ 취수해역

√ 유통기한

√ 전화번호

▹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병마개에 표시사항을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위의 병마개 부착에 관한 표기사항을 준수해야 함

▹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표시사항을 용기나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유통기한

√ 전화번호

▹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 가능)

▹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

▹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 다만, 주표시면에 아래의 별도의 구획란의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

▹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

▹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글자의 크기로 표시해야 함

√ 취수해역의 이름은 주 표시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함)

√ 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취수해역의 이름 밑에 의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

※ "취수해역"이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해역으로서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원산지를 말합니다(「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2조제2호).

※ "주 표시면"이란 용기, 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는 면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2조제3호).

※ 먹는해양심층수의 세부표시 기준은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1조 및 별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위에 따른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는 그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8호).

5.2. 먹는해양심층수 수입 등

5.2.1. 먹는해양심층수 수입 및 유통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등록절차

▪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 성분 및 보관, 보관시설의 소재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관련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등록 신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전단)	구비 서류(「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 √보관시설명세서	무등록 영업: 폐쇄조치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무등록 영업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호)
변경등록 신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	구비서류(「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무등록 영업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호)
등록 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③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④ 임원이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록 취소 [다만, 법인의 임원이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 시·도지사는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등록 취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② 수질기준과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 ③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산지·성분·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때 ④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 ⑤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때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 수입신고의무

▪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다음의 서류와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구분	구비서류	내용
수입신고	구비서류(「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수입신고서 √수입 관련 서류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검사서 사본 √제조일자 증명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수질검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및 별표 10)
		수입신고증명서 발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서식)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제품명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제조업체명, 제조공장 소재지, 취수해역명, 보관시설의 소재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관련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신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전단)	구비서류(「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서 √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 포함) √ 보관시설명세서(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 사본으로 갈음)	무신고 영업: 폐쇄조치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1호다목) 무신고 영업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호의2)
변경신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후단)	구비서류(「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서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무신고 영업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호의2)
신고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③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이 폐쇄(①에 해당하여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④ 임원이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영업장 폐쇄 [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

영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

▪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제11호).

영업장 폐쇄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② 수질기준과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 ③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산지·성분·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때 ④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 ⑤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때

5.2.2. 먹는해양심층수 판매 등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유통기한

▪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본문).

▪ 다만,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함)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와 함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단서·제2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위반 시 제재

▪ 누구든지 유통기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 이를 위반한 제조업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6호).

광고의 제한

광고 제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텔레비전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위의 광고 제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 광고 제한 등과 시정조치 등을 위반한 제조업자 등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호 및 제7호).

5.2.3.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란?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이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 이라 함)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일정금원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부담금 부과·징수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부과대상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조업자 등이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 -부과대상 제외 √수출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피해주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	-
부과금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5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53	-
부담금 납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제8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분할납부 가능 -분기별로 부과·징수	-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부담금 미납 시 독촉장 발부 √가산금(부담금의 100분의 3) 징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부담금증명표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부담금의 납부 또는 면제 대상을 증명하는 표지 √2회 이상 부담금 미납 시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제한	표시의무 위반: 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0호)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호)